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31

발의연월일: 2020. 11. 4.

발 의 자:홍성국·강선우·강준현

김경만 • 민병덕 • 박재호

양기대・양정숙・양향자

이광재 • 인재근 • 임종성

홍익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자신의 계좌를 대여할 수 없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중개 또는 대행하는 행위는 무인가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인가영업행위인 계좌 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시 예탁 금이나 증거금을 위탁할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을 유인해 대여계좌를 개설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불법대여계좌 중개 및 알선 행위의 피해 범위 및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

444조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알선·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 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4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알선·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
	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
	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
	<u> 여서는 아니 된다.</u>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4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u>
	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u>자</u>
2. ~ 29. (생 략)	2. ~ 29. (현행과 같음)